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구



보

선 결	기 관 의 장

제 23 호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70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70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영종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생활폐기물의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신설 및 종량제 봉투 환불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가. 용어 삭제(가정사업계폐기물) 및 신설(전자신고) (안 제2조)
- 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안 제10조)
- 다. 종량제 봉투 종류, 규격 변경(안 제14조~제18조, 제21조, 제23조)
- 라. 종량제 봉투 환불사항 개정(안 제22조, 제26조)
- 마.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변경(안 별표 1)
- 바.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변경(안 별표 3)
- 사.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삭제(안 별표 4)

□ 의 건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폐기물시설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순환과(폐기물시설팀)
- ▷ 전 화 : 032)760-7417 [FAX 032)760-7409]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형 폐기물 품목 수수료 신설 및 종량제 봉투 환불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삭제(가정사업계폐기물) 및 신설(전자신고) (안 제2조)
- 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안 제10조)
- 다. 종량제 봉투 종류, 규격 변경(안 제14조~제18조, 제21조, 제23조)
- 라. 종량제 봉투 환불사항 개정(안 제22조, 제26조)
- 마.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변경(안 별표 1)
- 바.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변경(안 별표 3)
- 사.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삭제(안 별표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입법예고:

다.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자신고”란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키오스크)을 통해 배출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접수”를 “전자신고”로,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를 “배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대”를 “규격마대”로, “30킬로그램”을 “20킬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며, 10장 이상”을 “제1항제6호 방법으로 배출하는 마대는 5매 이하로 배출하며, 5매 초과”로 한다.

가. 마대 등에 답아 제3호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배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를 “일반용봉투”로, “재사용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를 “재사용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시하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및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를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종량제봉투 등”을 각각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종량제봉투 등은”을 “종량제봉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종량제봉투 등”을 “종량제봉투”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을 “전자 신고를”로, “납부할 수 있으며”를 “납부해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을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종량제봉투의 공급”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량제봉투 등”을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량제봉투 등을”을 “종량제봉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중 “종량제봉투 등”을 각각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량제봉투 등을”을 “종량제봉투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량제봉투 등”을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급대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단,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과”를 “가격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은 공급대행자 또는 판매소에서 한다. 단, 공급대행자가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4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 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 4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침대세트	1인용	14,000	식탁 (의자별도)	6인용 이상	7,000
	2인용(퀸사이즈포함)	16,000		6인용 미만	6,000
	2층침대	29,000		대리석식탁	10,000
	유아용	11,000		아일랜드(나무)	7,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아일랜드(대리석)	10,000
침대틀	1인용	3,000	받침대(TV, 오디오)	모든규격	3,000
	2인용(퀸사이즈포함)	4,000	의자	모든규격	4,000
	2층침대	10,000		소형(유치원용)	2,000
	유아용	5,000		h형(상판,책장,서랍포함)	12,000
침대 매트리스	1인용	8,000	책상	양수(양서랍)	7,000
	2인용(퀸사이즈포함)	9,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유아용	3,000		컴퓨터책상	5,000
돌(흙)침대	1인용세트	11,000		사무용책상	6,000
	2인용세트	21,000		상판	3,000
라꾸라꾸침대	모든규격	10,000	책장 (책꽂이)	3단 이상	6,000
쇼파 (분리기준)	1인용	5,000		3단 미만	5,000
	2인용	6,000	장식장,진열장 (차단스)	대(가로 90cm 이상)	8,000
	3인용	10,000		중(가로 90cm 미만)	6,000
	4인용 이상(일체형)	11,000		소(가로 60cm 미만)	4,000
	카우치	10,000	문갑 (거실장)	모든규격(유리별도)	6,000
	보조쇼파(스툴)	5,000		돌·유리문갑	10,000
	유아용	3,000	서랍장	5단이상(3단양수포함)	8,000
	쇼파 테이블	3,000		5단 미만	6,000
				책상보조서랍	5,000
장롱 (1쪽당)	너비 120cm 이상	11,000	수납장	다용도수납장	4,000
	너비 90cm 초과	10,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너비 90cm 이하	8,000	욕실장	모든규격	4,000
	프레임(틀)	5,000	컬러박스	모든규격	2,000
탁자	10인용 이상	9,000		1.5m 이상	8,000
	10인용 미만	5,000	캐비닛	1.5m 미만	4,000
협탁	모든규격	2,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신발장	1.5m 이상	6,000	옥돌자석매트	모든규격	11,000
	1.5m 미만	3,000	아이스박스	대(길이 1m 이상)	5,000
	아파트 옵션 수납 신발장	10,000		중(길이 1m 미만)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소(길이 50cm 미만)	2,000
	화장대거울	2,000	어항	길이 2m 이상	8,000
	업소용	10,000		길이 1m 이상	5,000
사무용칸막이 (파티션)	1m 이상	5,000		길이 1m 미만	3,000
	1m 미만	4,000	액자	대각선 1m 초과	5,000
안내카운터	가로 1.5m 이상	10,000		대각선 1m 이하	3,000
	가로 1.5m 미만	8,000		대각선 50cm 미만	2,000
씽크대 (찬장포함)	대(1m 이상)	6,000	화분	대(70cm 초과)	5,000
	소(1m 미만)	4,000		중(70cm 미만)	4,000
	상부장(플랜장, 후드)	5,000		소(40cm 미만)	3,000
쌀통	일반	3,000	항아리	대(70cm 초과)	5,000
	다용도	4,000		중(70cm 미만)	4,000
문짝	철재	5,000		소(40cm 미만)	3,000
	목재	4,000	카펫	대(길이 2.5m 이상)	12,000
	유리문	10,000		중(길이 2.5m 미만)	7,000
문틀	대(높이1.6m 이상)	5,000		소(길이 1.5m 미만)	5,000
	소(높이1.6m 미만)	3,000	밥상	대(1.2m 이상)	4,000
창문	모든규격	3,000		소(1.2m 미만)	3,000
변기	모든규격	5,000		다과상	2,000
	유아용 변기	3,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비데	3,000	돛자리	모든규격	5,000
손소독기	디스펜서류	2,000	병풍	모든규격	5,000
헬멧	모든규격	5,000	방충망	대(문)	4,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소(창문)	3,000
	강화유리	10,000	소화기	3.3kg 까지	3,000
전기매트	1인용	6,000		10kg 까지	5,000
	2인용	8,000		20kg 까지	7,000
온수매트	1인용	6,000	재봉틀	대	5,000
	2인용	8,000		소	3,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벽시계	일반형	3,000	쟁반	모든규격	1,000
	스탠드형	5,000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3,000
고무통	지름 50cm 이상	5,000		카시트	4,000
	지름 50cm 미만	3,000		전동차	5,000
커튼봉	모든규격	2,000	장난감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블라인드	쪽당	5,000		소형(3kg 당)	1,000
여행용가방	대(화물용)	5,000	자전거	대(일반)	5,000
	소(기내용)	3,000		중(어린이)	4,000
거울	전신거울(대)	5,000		소(유아용)	3,000
	반신거울(소)	2,000	실링팬(전등)	모든규격	5,000
타이어	1,100mm 초과	12,000	가스렌지	대(오븐포함)	4,000
	1,100mm 이하	5,000		소	2,000
	600mm 이하	3,000	물탱크 (FRP 제외)	대(2.5톤 이상)	50,000
빨래판	모든규격	2,000		소(2.5톤 미만)	30,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3,000	팔레트	모든규격	5,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석유난로	모든규격	4,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수도 호스	10m 당	1,000
	행거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우산	모든규격	1,000		업소용	3,000
오락기	일반	10,000	레인지후드	모든규격	2,000
게시판(철판)	모든규격	3,000	도마	모든규격	2,000
페인트통	모든규격	1,000	스피커	대(스탠드형)	5,000
휠체어	모든규격(전동제외)	2,000		소	3,000
화환	꽃제외	3,000	욕실발판	모든규격	3,000
	꽃포함	7,000	바둑판	대(두꺼운 판)	2,000
드럼통	모든규격	5,000		소(얇은 판)	1,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고양이 타워	대 1.5m 이상	10,000
마네킹	석고마네킹	8,000		소 1.5m 미만	5,000
	전신용	5,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반신용(머리 포함)	3,000		일반(업라이트)	11,000
장판	대(5m 이상)	5,000	오르간	전자피아노	6,000
	소(5m 미만)	4,000		모든규격	6,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텐트	가정용	2,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천막	가정용	6,000	부분 안마기	모든규격	5,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매트류	폴더(알집)매트(개당)	8,000
라켓	개당	1,000		장판식 매트(개당)	6,000
스키, 보드류	부츠, 스틱류	2,000		놀이용 매트(개당)	5,000
	스키, 보드	3,000		스폰지 매트(개당)	3,000
골프류	골프가방	5,000		실내운동기구	요가매트 1인용
	골프채 개당	1,000	모든규격		10,000
악기(기타 등)	모든규격	2,000		소형운동기구	5,000
트램펄린	가정용	5,000	트리	1m 미만	3,000
개 집	모든규격	5,000		1m 이상	5,000
동물케이지	대(1m 이상)	5,000	체중계	대(스탠드형)	5,000
	소(1m 미만)	3,000		소	2,000
조명기구	실링 팬	5,000	수납(리빙)박스	모든규격	2,000
	상들리에	2,000	욕조	모든규격	10,000
	LED조명	3,000		반신욕기	10,000
	형광등틀	3,000		족욕기	5,000
	스탠드	2,000		플라스틱 재질	5,000
에어간판	모든규격	10,000		유아용	2,000
킥보드	모든규격(전동제외)	3,000	급식기	애완동물용	3,000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침구류, 커튼 등)		종량제봉투 50 ℓ 부피기준(무게 13kg 이하)			3,000
		종량제봉투 75 ℓ 부피기준(무게 20kg 이하)			5,000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토사 등)		마대 1개 기준(무게 15kg 이하)			4,000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표시 (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2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종 류	용 량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 투	5 ℓ	150	10	160	흰 색
	10 ℓ	289	21	310	
	20 ℓ	570	50	620	
	50 ℓ	1,418	122	1,540	
	75 ℓ	2,121	179	2,300	
재사용 봉 투	10 ℓ	289	21	310	하늘색
	20 ℓ	570	50	620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 ℓ	3,640	330	3,970	흰 색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 8.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8. (현행과 같음) 9. “전자신고”란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키오스크)을 통해 배출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생략) 2. 가정사업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	제10조(배출 방법) ① -----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

4. 5. (생략)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

나. (생략)

②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이상은 20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마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30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며, 10장 이상 배출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3. -----
전자신고-----

----- 배출

4. 5. (현행과 같음)

6. -----

가. 마대 등에 담아 제3호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배출

나. (현행과 같음)

② -----

----- 규격마대-----
----- 20킬로그램 -----
-----.

③ 제1항제6호 방법으로 배출하는 마대는 5매 이하로 배출하며, 5매 초과
-----.

④ ~ ⑥ (생 략)

제14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음식물류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로 구분하며 그 각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가정사업계용봉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음식물류전용봉투: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생 략)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공사장 및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과 같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6. (생 략)

②·③ (생 략)

제15조(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
----- 일반용봉투-----

----- 재사용봉투-----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다량배출사업장-----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
-----.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자치구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및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표시-----.

③ -----

----- 종량제봉투-----

-----.

④ 종량제봉투-----
-----.

제16조(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

----- 전자신고를 -----
----- 납부해야 하며-----
-----.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판매소 지정) ① (생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등 판매 금지

2. 종량제봉투 등 판매시설 구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

3. (생략)

4. 훼손(파손 또는 오염된 것을 말한다)된 종량제봉투 등 판매 금지

5. (생략)

6.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이행

7. (생략)

② ----- 종량제봉투의 효율적-----

----- 종량제봉투의 공급-----.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판매소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종량제봉투-----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
- 종량제봉투를 -----
-----.

1. ----- 종량제봉투 -----

2. 종량제봉투 -----

3. (현행과 같음)

4. -----
--- 종량제봉투 -----

5. (현행과 같음)

6. -----
--- 종량제봉투 -----

7. (현행과 같음)

② 판매자는 구청장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2. (생략)

제21조(공급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2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② (생략)

<신설>

제23조(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생략)

2. 대형폐기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과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지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부담

② -----
----- 종량제봉투 -----
----- . -----
----- .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급업무의 대행) ① -----
----- 종량제봉투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급대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단,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제23조(부과·징수)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격 -----
로 -----

3. (생 략) ② (생 략) 제2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② (생 략) ③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 ----- ----- ----- ----- ----.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은 공급대행자 또는 판매소에서 한다. 단, 공급대행자가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종명	구격	수수료	종명	구격	수수료
침대세트	1인용	14,000	식탁 (석자별도)	6인용 이상	7,000
	2인용(원사이즈포함)	16,000		6인용 미만	6,000
	2층침대	29,000		패러석식탁	10,000
침대커리	유아용	11,000		아일랜드(나무)	7,000
	모든규격	3,000		아일랜드(패러석)	10,000
침대통	1인용	3,000	방한대(TV, 50~120)	모든규격	3,000
	2인용(원사이즈포함)	4,000		모든규격	4,000
	2층침대	10,000		소형(유지원용)	2,000
	유아용	5,000	석자	h형(상관, 좌광, 서광포함)	12,000
침대 매트리스	1인용	8,000		양수(양서함)	7,000
	2인용(원사이즈포함)	9,000		편수(외지함, 무서함)	6,000
	유아용	3,000		정류석좌상	5,000
율(表)침대	1인용세트	11,000		차우용좌상	6,000
	2인용세트	21,000	책상	상관	3,000
라파라부침대	모든규격	10,000		3단 이상	6,000
	1인용	5,000		3단 미만	5,000
소파 (분리기준)	2인용	6,000		대(가로 90cm 이상)	8,000
	3인용	10,000		중(가로 90cm 미만)	6,000
	4인용 이상(일체형)	11,000		소(가로 60cm 미만)	4,000
	카우치	10,000		모든규격(유리별도)	6,000
	보조소파(소출)	5,000		율·율리로깅	10,000
	유아용	3,000		5단 이상(3단 양우포함)	8,000
	소파 테이블	3,000		5단 미만	6,000
장롱 (1쪽당)	너비 120cm 이상	11,000	서랍장	책상보조서랍	5,000
	너비 90cm 초과	10,000		차용도수납장	4,000
	너비 90cm 이하	8,000		모든규격	3,000
	프레임(통)	5,000	유실장	모든규격	4,000
탁자	10인용 이상	9,000		모든규격	2,000
	10인용 미만	5,000		1.5m 이상	8,000
협탁	모든규격	2,000	캐비닛	1.5m 미만	4,000

(단위: 원)

종명	구격	수수료	종명	구격	수수료
신발장	1.5m 이상	6,000	목욕자석대	모든규격	11,000
	1.5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아파트 용선 수납 신발장	10,000		중(길이 1m 미만)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화장대거울	2,000		길이 2m 이상	8,000
사무용관악이 (확대선)	연소용	10,000		길이 1m 이상	5,000
	1m 이상	5,000	어항	길이 1m 미만	3,000
완내카손터	1m 미만	4,000		대각선 1m 초과	5,000
	가로 1.5m 이상	10,000		대각선 1m 이하	3,000
	가로 1.5m 미만	8,000	책자	대각선 50cm 미만	2,000
선풍기 (완장포함)	대(1m 이상)	6,000		대(70cm 초과)	5,000
	소(1m 미만)	4,000		중(70cm 미만)	4,000
	상부장(통전장, 후드)	5,000		소(40cm 미만)	3,000
냉동	일반	3,000	화분	대(70cm 초과)	5,000
	다용도	4,000		중(70cm 미만)	4,000
문닫	철계	5,000		소(40cm 미만)	3,000
	유리문	10,000	항아리	대(길이 2.5m 이상)	12,000
문통	대(높이 1.5m 이상)	5,000		중(길이 2.5m 미만)	7,000
	소(높이 1.5m 미만)	3,000		소(길이 1.5m 미만)	5,000
장문	모든규격	3,000	가켓	대(1.2m 이상)	4,000
	모든규격	5,000		소(1.2m 미만)	3,000
변기	유아용 변기	3,000		다각상	2,000
	모든규격	10,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목조	플라스틱 계질	5,000		모든규격	5,000
	유아용	2,000		모든규격	5,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병통	대(문)	4,000
	강화유리	10,000		소(장문)	3,000
전기매트	1인용	6,000	소파기	3 3kg 짜리	3,000
	2인용	8,000		10kg 짜리	5,000
	2인용	8,000		20kg 짜리	7,000
손수매트	1인용	6,000	재봉틀	대	5,000
	2인용	8,000		소	3,000

개정안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종명	구격	수수료	종명	구격	수수료
침대세트	1인용	14,000	식탁 (석자별도)	6인용 이상	7,000
	2인용(원사이즈포함)	16,000		6인용 미만	6,000
	2층침대	29,000		패러석식탁	10,000
침대커리	유아용	11,000		아일랜드(나무)	7,000
	모든규격	3,000		아일랜드(패러석)	10,000
침대통	1인용	3,000	방한대(TV, 50~120)	모든규격	3,000
	2인용(원사이즈포함)	4,000		모든규격	4,000
	2층침대	10,000		소형(유지원용)	2,000
	유아용	5,000	석자	h형(상관, 좌광, 서광포함)	12,000
침대 매트리스	1인용	8,000		양수(양서함)	7,000
	2인용(원사이즈포함)	9,000		편수(외지함, 무서함)	6,000
	유아용	3,000		정류석좌상	5,000
율(表)침대	1인용세트	11,000		차우용좌상	6,000
	2인용세트	21,000	책상	상관	3,000
라파라부침대	모든규격	10,000		3단 이상	6,000
	1인용	5,000		3단 미만	5,000
소파 (분리기준)	2인용	6,000		대(가로 90cm 이상)	8,000
	3인용	10,000		중(가로 90cm 미만)	6,000
	4인용 이상(일체형)	11,000		소(가로 60cm 미만)	4,000
	카우치	10,000		모든규격(유리별도)	6,000
	보조소파(소출)	5,000		율·율리로깅	10,000
	유아용	3,000		5단 이상(3단 양우포함)	8,000
	소파 테이블	3,000		5단 미만	6,000
장롱 (1쪽당)	너비 120cm 이상	11,000	서랍장	책상보조서랍	5,000
	너비 90cm 초과	10,000		차용도수납장	4,000
	너비 90cm 이하	8,000		모든규격	3,000
	프레임(통)	5,000	유실장	모든규격	4,000
탁자	10인용 이상	9,000		모든규격	2,000
	10인용 미만	5,000		1.5m 이상	8,000
협탁	모든규격	2,000	캐비닛	1.5m 미만	4,000

(단위: 원)

종명	구격	수수료	종명	구격	수수료
신발장	1.5m 이상	6,000	목욕자석대	모든규격	11,000
	1.5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아파트 용선 수납 신발장	10,000		중(길이 1m 미만)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화장대거울	2,000		길이 2m 이상	8,000
사무용관악이 (확대선)	연소용	10,000		길이 1m 이상	5,000
	1m 이상	5,000	어항	길이 1m 미만	3,000
완내카손터	1m 미만	4,000		대각선 1m 초과	5,000
	가로 1.5m 이상	10,000		대각선 1m 이하	3,000
	가로 1.5m 미만	8,000	책자	대각선 50cm 미만	2,000
선풍기 (완장포함)	대(1m 이상)	6,000		대(70cm 초과)	5,000
	소(1m 미만)	4,000		중(70cm 미만)	4,000
	상부장(통전장, 후드)	5,000		소(40cm 미만)	3,000
냉동	일반	3,000	화분	대(70cm 초과)	5,000
	다용도	4,000		중(70cm 미만)	4,000
문닫	철계	5,000		소(40cm 미만)	3,000
	유리문	10,000	항아리	대(길이 2.5m 이상)	12,000
문통	대(높이 1.5m 이상)	5,000		중(길이 2.5m 미만)	7,000
	소(높이 1.5m 미만)	3,000		소(길이 1.5m 미만)	5,000
장문	모든규격	3,000	가켓	대(1.2m 이상)	4,000
	모든규격	5,000		소(1.2m 미만)	3,000
변기	유아용 변기	3,000		다각상	2,000
	모든규격	10,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목조	플라스틱 계질	5,000		모든규격	5,000
	유아용	2,000		모든규격	5,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병통	대(문)	4,000
	강화유리	10,000		소(장문)	3,000
전기매트	1인용	6,000		3 3kg 짜리	3,000
	2인용	8,000		10kg 짜리	5,000
	2인용	8,000		20kg 짜리	7,000
손수매트	1인용	6,000	재봉틀	대	5,000
	2인용	8,000		소	3,000

현행

(단위: 원)

종명	규격	수수료	종명	규격	수수료
벽시계	일반형	3,000	정반	모든규격	1,000
	스탠드형	5,000		유모자, 보행기	3,000
교우봉	지름 50cm 이상	5,000		가시트	4,000
	지름 50cm 미만	3,000	유아용품	전동차	5,000
스탠드	모든규격	2,000		대형(미끄럼틀, 놀이길 등)	5,000
플라인드	목당	5,000		소형(대크, 당)	1,000
여형용가방	대(파출용)	5,000	장난감	대(일반)	5,000
	소(가내용)	3,000		총(어린이)	4,000
거울	전신거울(대)	5,000		소(유아용)	3,000
	반신거울(소)	2,000	실링팬(전동)	모든규격	5,000
타이어	1,100mm 초과	12,000		대(오른포함)	4,000
	1,100mm 이하	5,000		소	2,000
	600mm 이하	3,000	플렉코	대(2.5톤 이상)	50,000
할대판	모든규격	2,000		소(2.5톤 미만)	30,000
할대간조대	모든규격	3,000	팔레트	모든규격	5,000
다리기판	모든규격	2,000	석유난로	모든규격	4,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수도 호스	10m, 당	1,000
	행거	3,000		가경용	2,000
수산	모든규격	1,000	환풍기	업소용	3,000
오막기	일반	10,000		모든규격	2,000
케시판(철판)	모든규격	3,000	도마	모든규격	2,000
베인드통	모든규격	1,000	스피커	대(스탠드형)	5,000
필레어	모든규격(전통제외)	2,000		소	3,000
파판	꽃제외	3,000	육식발판	모든규격	3,000
	꽃포함	7,000		대(두꺼운 판)	2,000
드럼통	모든규격	5,000		소(얇은 판)	1,000
보일러	모든규격	5,000	코양이 탁워	대 1.5m 이상	10,000
아세징	전신용	5,000		소 1.5m 미만	5,000
	반신용(머리 포함)	3,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에어간판	모든규격	10,000		일반(엠프라이트)	11,000
	대(5m 이상)	5,000		전자피아노	6,000
장판	소(5m 미만)	4,000	오로강	모든규격	6,000

(단위: 원)

종명	규격	수수료	종명	규격	수수료
전막	가경용	2,000	안아씨자	모든규격	10,000
전막	가경용	5,000	주온 안마기	모든규격	5,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콜마(알집)메트(개당)	8,000
	개당	1,000		광관식 메트(개당)	6,000
스키, 보드류	주츠, 스틱류	2,000		놀이용 메트(개당)	5,000
	스키, 보드	3,000		스존지 메트(개당)	3,000
골프류	골프가방	5,000		요가메트 1인용	3,000
	골프채 개당	1,000	실내운동기구	모든규격	10,000
악기(기타 등)	모든규격	2,000		소형운동기구	5,000
드럼월런	가경용	5,000	도리	1m 미만	3,000
개질	모든규격	5,000		1m 이상	5,000

※ 상기 외의 대형패기들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안

(단위: 원)

종명	규격	수수료	종명	규격	수수료
벽시계	일반형	3,000	정반	모든규격	1,000
	스탠드형	5,000		유모자, 보행기	3,000
교우봉	지름 50cm 이상	5,000		가시트	4,000
	지름 50cm 미만	3,000	유아용품	전동차	5,000
저분류	모든규격	2,000		대형(미끄럼틀, 놀이길 등)	5,000
플라인드	목당	5,000		소형(대크, 당)	1,000
여형용가방	대(파출용)	5,000	장난감	대(일반)	5,000
	소(가내용)	3,000		총(어린이)	4,000
거울	전신거울(대)	5,000		소(유아용)	3,000
	반신거울(소)	2,000	실링팬(전동)	모든규격	5,000
타이어	1,100mm 초과	12,000		대(오른포함)	4,000
	1,100mm 이하	5,000		소	2,000
	600mm 이하	3,000	플렉코	대(2.5톤 이상)	50,000
할대판	모든규격	2,000		소(2.5톤 미만)	30,000
할대간조대	모든규격	3,000	팔레트	모든규격	5,000
다리기판	모든규격	2,000	석유난로	모든규격	4,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수도 호스	10m, 당	1,000
	행거	3,000		가경용	2,000
수산	모든규격	1,000	환풍기	업소용	3,000
오막기	일반	10,000		모든규격	2,000
케시판(철판)	모든규격	3,000	도마	모든규격	2,000
베인드통	모든규격	1,000	스피커	대(스탠드형)	5,000
필레어	모든규격(전통제외)	2,000		소	3,000
파판	꽃제외	3,000	육식발판	모든규격	3,000
	꽃포함	7,000		대(두꺼운 판)	2,000
드럼통	모든규격	5,000		소(얇은 판)	1,000
보일러	모든규격	5,000	코양이 탁워	대 1.5m 이상	10,000
아세징	회코아세징	8,000		소 1.5m 미만	5,000
	전신용	5,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반신용(머리 포함)	3,000		일반(엠프라이트)	11,000
에어간판	모든규격	10,000		전자피아노	6,000
	대(5m 이상)	5,000	오로강	모든규격	6,000
	소(5m 미만)	4,000			

(단위: 원)

종명	규격	수수료	종명	규격	수수료
텐트	가경용	2,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천막	가경용	5,000	부분 안마기	모든규격	5,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메트류	콜마(알집)메트(개당)
라켓	개당	1,000	강판식 메트(개당)		6,000
스키, 보드류	부츠, 스틱류	2,000	놀이용 메트(개당)		5,000
	스키, 보드	3,000	스존지 메트(개당)		3,000
골프류	골프가방	5,000	요가메트 1인용		3,000
	골프채 개당	1,000	모든규격		10,000
악기(기타 등)	모든규격	2,000	실내운동기구	소형운동기구	5,000
트럼폴린	가경용	5,000	트리	1m 미만	3,000
개질	모든규격	5,000		1m 이상	5,000
				대(스탠드형)	5,000
동물케이지	대(1m 이상)	5,000	체중계	소	2,000
	소(1m 미만)	3,000		수납(리빙)박스	모든규격
조명기구	실링팬	5,000	목조		모든규격
	상들리에	2,000		반산목기	10,000
	LED조명	3,000		족욕기	5,000
	형광등틀	3,000		클라스틱 개질	5,000
	스탠드	2,000		유아용	2,000
에어간판	모든규격	10,000	급식기	여관동물용	3,000
키보드	모든규격(전통제외)	3,000		종량제봉투 50ℓ 부피기준(무게 13kg 이하)	3,000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침구류, 커튼 등)			종량제봉투 75ℓ 부피기준(무게 20kg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1개 기준(무게 15kg 이하)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타사 등)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현행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표시(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2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종 류	용 량	제작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 투	5ℓ	150	10	160	원 색
	10ℓ	289	21	310	
	20ℓ	570	50	620	
	50ℓ	1,418	122	1,540	
	75ℓ	2,121	179	2,300	
제사용 봉 투	10ℓ	289	21	310	하늘색
	20ℓ	570	50	620	
가 경 사업계용 봉 투	30ℓ	2,950	270	3,220	황 색
	50ℓ	4,850	440	5,290	
	75ℓ	7,270	660	7,930	
공 사 경 영활동기물 마대	30ℓ	1,410	130	1,540	황 색
	60ℓ	2,820	250	3,070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ℓ	3,640	330	3,970	원 색
대형폐기물 스티커	1,000원권	910	90	1,000	
	5,000원권	4,550	450	5,000	

개정안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표시(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2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종 류	용 량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 투	5ℓ	150	10	160	원 색
	10ℓ	289	21	310	
	20ℓ	570	50	620	
	50ℓ	1,418	122	1,540	
	75ℓ	2,121	179	2,300	
제사용 봉 투	10ℓ	289	21	310	하늘색
	20ℓ	570	50	620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ℓ	3,640	330	3,970	원 색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가. 배 경

- 생활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주민들이 배출하고자 할 때 불편이 있음
- 대용량 봉투(규격마대)에 과도하게 담아 배출하여 환경공무원의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존재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종류를 줄여 단순화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주민 편의 향상
- 종량제 봉투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키오스크(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모바일에서 신고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처리 효율 증진
- 조개껍데기류를 원형 그대로 배출하지 않고 분쇄하여 배출하는 경우 무게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현재 30kg로 제한하였으나 환경공무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 등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규격마대) 무게 제한강화
-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소규모로 발생하는 공사 및 작업을 위한 용도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나 호에 따라 배출 필요
일시에 많은 배출은 수집운반과정에서 환경공무원의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존재하여 배출 수량 강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연번	검토내용	검토결과
1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부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부
3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부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다.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제10조(배출방법)

목 적	- 주인 불편사항 개선 - 환경공무관의 근골격제 부상 예방	타 당
수 단	-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 종량제 봉투(마대)의 무게 제한 강화 - 종량제 봉투(마대)의 배출 수량 제한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배출방법을 통합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함
- 종량제 봉투(마대)의 무게 제한 및 배출수량 제한 강화는 집행 자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행 시 환경공무관의 근골격제 부상 방지 효과가 있음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 - 170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개선하여 배출방법의 간소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무단투기 신고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나. 가정사업계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삭제하여 배출 방법, 봉투 규격, 가격 산정기준 삭제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련 사항 삭제(안 별표 1 ~ 별표 4)

□ 의 건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폐기물시설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순환과(폐기물시설팀)

▷ 전 화 : 032)760-7417 [FAX 032)760-7409]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개선하여 배출방법의 간소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단투기 신고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나. 가정사업계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삭제하여 배출 방법, 봉투 규격, 가격 산정기준 삭제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련 사항 삭제
(안 별표 1 ~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입법예고:

다.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비디오테이프, CD”를 “동영상”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 1의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배출 시간	봉투 종류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일반용봉투 (흰색)	문앞 배출
재활용품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재활용 전용 봉투, 투명봉투	문앞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문앞 배출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마대 (흰색)	문앞 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 가능

※ 청소업체 휴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일)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

[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 량 (L)	치수(cm) (나비×높이)	높 이(cm)			묶는 끈(cm)			두께 (mm)	인장강도 (N/mm ²)	신장률 (%)	노치 후 인열강도		접합 상태	용 도	비 고
		폐기물을 담는 부분	묶는 부분	접합가 공부분	나비	길이	손잡이 끈 폭				보 통 (N/mm)	접은 곳 (N/mm)			
2	19×35.5	23.4	11.1	1	4	8	-	0.025	42.1이상	340이상	110.0이상	95.0이상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딜 것 등	음식물용	
3	22×39.5	26.5	12.0	1	5	9	-	0.025	42.1이상	340이상	110.0이상	95.0이상		음식물용	
									26.5이상	380이상	65.0이상	55.0이상		일반용	
5	36×46.5	32.3	13.2	1	6	10	-	0.030	26.5이상	42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10	33×56.5	40.0	15.5	1	7	12	-	0.030	26.5이상	42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36×53.5	36.0	16.5	1	7	12	5	0.025	42.1	340	110.0	95.0		재사용	
20	45×69.5	50.1	18.4	1	8	15	-	0.035	26.5이상	440이상	70.0이상	60.0이상		일반용, 음식물용	
	45×65.3	45.0	19.3	1	8	15	6	0.030	42.1	360	110.0	95.0		재사용	
50	56×91.5	67.7	22.8	1	12	19	-	0.045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75	65×103.5	76.8	25.7	1	14	21	-	0.050	26.5이상	460이상	75.0이상	70.0이상		일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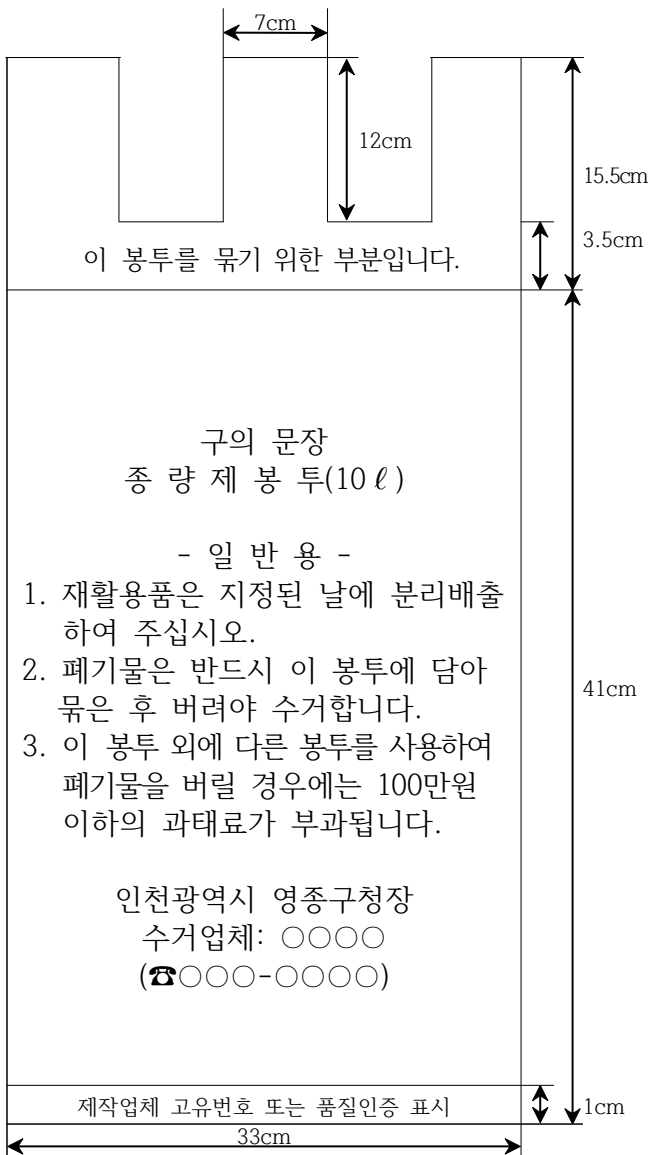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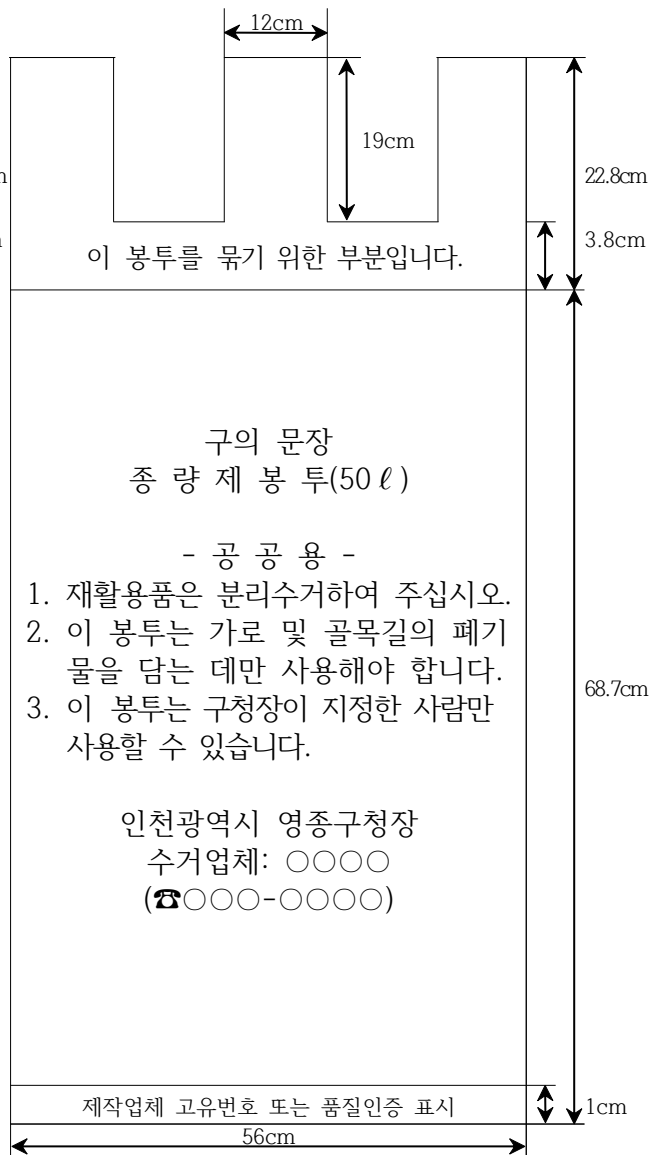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① 종량제 봉투(일반용)



② 종량제 봉투(공공용)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10ℓ 및 50ℓ 봉투의 사양임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용봉투

$$\text{봉투가격} = [\text{①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 \text{③ 봉투제작비}] \\ \times \text{② 주민부담률 목표치} + \text{④ 판매이익}$$

주] ① ℓ 당 처리비용 = ㉞ 처리비용 ÷ ㉟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㉞ 처리비용 = 직영처리비 + 위탁처리비 - 대형폐기물처리비용(수수료수입)

○ 직영처리비: 가로청소 등 공공용봉투로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을 합산하되 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비는 감각상각을 고려하여 분할계산

○ 위탁처리비: 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금액 또는 대행업체의 봉투판매수입(종량제가 적용되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비용 포함)

㉟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총용량

② 봉투제작비: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③ 주민부담률: 봉투판매금액 ÷ 실제주민배출 폐기물 실 처리비용

④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2. 삭제

3.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text{봉투가격} = [\text{처리단가/kg} \times \text{봉투규격}(\ell) \times 0.25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 (소각장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60 ℓ

③ 환산계수 0.25는 조개껍데기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 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조개껍데기류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무단투기 등 신고) ①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9조(무단투기 등 신고)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진, <u>비디오테이프</u> , <u>CD</u> 등 위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4. --- <u>동영상</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행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배출 시간	봉투 종류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일반용봉투 (황색)	문앞 배출
재활용품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재활용 전용 봉투, 투명봉투	문앞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문앞 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후	마대 (황색)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마대 (황색)	문앞 배출
가정사업계폐기물	신고 후	가정사업계용 봉투(황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 가능

※ 청소업체 휴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일)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

개정안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배출 시간	봉투 종류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일반용봉투 (황색)	문앞 배출
재활용품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재활용 전용 봉투, 투명봉투	문앞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문앞 배출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마대 (황색)	문앞 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 가능

※ 청소업체 휴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일)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

현행

[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량 (L)	지수(㎝) (4배×높이)	높이(㎝) 폐기물을 담는 부분	폭은 부분	전환자 공용분	내배 길이	순환이 관 폭	두께 (㎜)	인장강도 (N/㎠)	산장용 (%)	노저 후 인장강도 보통 (N/㎠)	결은 곳 (N/㎠)	전환 상태	용도	비고
2	19×35.5	23.4	11.1	1	4	8	~	0.025	42.1미상	34.0미상	110.0미상	95.0미상	음식물용	
3	22×39.5	26.5	12.0	1	5	9	~	0.025	42.1미상	34.0미상	110.0미상	95.0미상	음식물용	
5	36×46.5	32.3	13.2	1	6	10	~	0.030	26.5미상	38.0미상	65.0미상	95.0미상	일반용	
10	33×56.5	40.0	15.5	1	7	12	~	0.030	26.5미상	42.0미상	70.0미상	60.0미상	일반용, 음식물용	
20	36×53.5	38.0	16.5	1	7	12	5	0.025	42.1	340	110.0	95.0	재사용	
30	45×69.5	50.1	18.4	1	8	15	~	0.035	26.5미상	44.0미상	70.0미상	60.0미상	일반용, 음식물용	
50	45×65.3	45.0	19.3	1	8	15	6	0.030	42.1	360	110.0	95.0	재사용	
75	48×78.5	57.2	20.3	1	10	17	~	0.035	26.5미상	44.0미상	70.0미상	60.0미상	가정사업계용	
100	56×91.5	67.7	22.8	1	12	19	~	0.045	26.5미상	46.0미상	75.0미상	70.0미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150	65×103.5	76.8	25.7	1	14	21	~	0.050	26.5미상	46.0미상	75.0미상	70.0미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로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① 종량제 봉투(일반용)	② 종량제 봉투(공공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10ℓ) - 일반용 - - 재활용종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하여 수집시오. -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추가합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추거업처: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통원인주 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종은 분리수거하여 수집시오. -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추거업처: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통원인주 표시

※ 문체색은 청색으로 하고, 문체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10ℓ 및 50ℓ 봉투의 사양임

개정안

[별표 2]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4조제2항 관련)

용량 (L)	지수(㎝) (4배×높이)	높이(㎝) 폐기물을 담는 부분	폭은 부분	전환자 공용분	내배 길이	순환이 관 폭	두께 (㎜)	인장강도 (N/㎠)	산장용 (%)	노저 후 인장강도 보통 (N/㎠)	결은 곳 (N/㎠)	전환 상태	용도	비고
2	19×35.5	23.4	11.1	1	4	8	~	0.025	42.1미상	34.0미상	110.0미상	95.0미상	음식물용	
3	22×39.5	26.5	12.0	1	5	9	~	0.025	42.1미상	34.0미상	110.0미상	95.0미상	음식물용	
5	36×46.5	32.3	13.2	1	6	10	~	0.030	26.5미상	38.0미상	65.0미상	95.0미상	일반용	
10	33×56.5	40.0	15.5	1	7	12	~	0.030	26.5미상	42.0미상	70.0미상	60.0미상	일반용, 음식물용	
20	36×53.5	38.0	16.5	1	7	12	5	0.025	42.1	340	110.0	95.0	재사용	
30	45×69.5	50.1	18.4	1	8	15	~	0.035	26.5미상	44.0미상	70.0미상	60.0미상	일반용, 음식물용	
50	45×65.3	45.0	19.3	1	8	15	6	0.030	42.1	360	110.0	95.0	재사용	
75	48×78.5	57.2	20.3	1	10	17	~	0.035	26.5미상	44.0미상	70.0미상	60.0미상	가정사업계용	
100	56×91.5	67.7	22.8	1	12	19	~	0.045	26.5미상	46.0미상	75.0미상	70.0미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150	65×103.5	76.8	25.7	1	14	21	~	0.050	26.5미상	46.0미상	75.0미상	70.0미상	일반용, 가정사업계용	

※ HDPE 재질 종량제봉투 기준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접합상태 및 그 밖의 상세 규격은 「쓰레기 수수로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① 종량제 봉투(일반용)	② 종량제 봉투(공공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10ℓ) - 일반용 - - 재활용종은 지정된 날에 분리배출하여 수집시오. -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추가합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추거업처: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통원인주 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50ℓ) - 공공용 - - 재활용종은 분리수거하여 수집시오. -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추거업처: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통원인주 표시

※ 문체색은 청색으로 하고, 문체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10ℓ 및 50ℓ 봉투의 사양임

개 정 안

③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

10cm		4.0
(구문장)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배출자보관용)	cm
(₩	원)	cm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부 작 품)
(₩ 원)		
☐ 대형폐기물 배출 요일		
종류	요일	
○○종	○,○요일	
○○종	○,○요일	
○○종	○,○요일	
○○종	○,○요일	
○○종	○,○요일	
○○종	○,○요일	
배출 날짜 일련 번호		
배출 주소		9.3
배출 품목		cm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1. 대형폐기물 상인(가)가 폐기물 주자를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업체에 연락 후 지정된 동별 수거요일 전날까지 문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장소가 다르거나, 스티커 가격이나 동으로 수거가 지정될 수 있으며, 배출 취소 시 원금(배출자보관용, 주작을 들 다) 없이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3. 가전제품은 우상 수거 대상이므로 기종에의지할 경우(☎1588-090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거장번호: 수거대행업체 ○○○○ ☎ ○○○-○○○○ * 물품사항번호: 영종구청 ○○차 ☎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구문장)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거업체 보관용)		
바.코.드		4.6
(₩ 원)		cm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별표 4]

총량제봄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응답률

봉투가격 = ① **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② **주민부담률** 목표치
 + ③ **봉투제작비** + ④ **판매이익**

주) ① 당 처리비용 = ⑤ **처리비용** ÷ **중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⑤ **처리비용** = **직영처리비** + **위탁처리비** - **대형폐기물처리비용(수수료수입)**
 ○ **직영처리비**: 가로청소 등 공공용봉투로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을 합산하고 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비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분할계산
 ○ **위탁처리비**: 대형업체와의 위탁계약금액 또는 대형업체의 봉투판매수입(중량제가 적용되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비용 포함)
 ⑥ **중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 연간 판매된 중량제봉투의 총용량
 ② **주민부담률**: 봉투판매금액 ÷ 실제주민매출 폐기물 실 처리비용
 ③ **봉투제작비**: 중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④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2. 가정사업계용봉투

◎ 가정사업계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t)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 정부고시단가: 225원/kg (발열량 3,000Kcal ~ 5,000Kcal)
 ㉡ 봉투규격: 30t(12kg ÷ 0.4), 50t(20kg ÷ 0.4), 75t(30kg ÷ 0.4)
 ㉢ 환산계수 0.4는 무게단위를 부피단위(t)로 환산하여 봉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
 ㉣ 수수료자립도: 가정사업제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유통별 제작단가를 말함

③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 삭제

[별표 4]

● **수량제봉투 가격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용봉투

분투가격 = ① 1당 처리비용 × 분투율 α (%) + ② 분투제작비

× ③ 주민부담률 목표치 + ④ 판매이익

주) ① 1당 처리비용 = ㉠ 처리비용 + ㉡ 종량제분투 판매 총 용량

㉠ 처리비용 = 직영처리비 + 위탁처리비 - 대형폐기물처리비용(수수료소급)

○ 직영처리비: 가로청소 등 공공용분투로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을 합산하되 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 설치비는 건감상각을 고려하여 분할계산

○ 위탁처리비: 대형업체와의 위탁계약금액 또는 대형업체의 분투판매수입(종량제가 적용되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비용 포함)

㉡ 종량제분투 판매 총 용량: 연간 판매된 종량제분투의 총용량

② 분투제작비: 종량제분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③ 주민부담률: 분투판매금액 ÷ 실제주민매출 폐기물 실 처리비용

④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분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2. 삭제

3.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봉투가격 = [처리단가] × 봉투규격 × 0.25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 (소각장반입료 + 수질유반비) × 톤
 ② 봉투규격: 60ℓ
 ③ 환산계수 0.25는 조개껍데기 비중으로 부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톤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조개껍데기류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현행	개정안
㉔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㉕ 공시장 생활폐기물(소규모 건설폐기물)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1.7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 (수도권매립지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30ℓ(10kg ÷ 0.4), 60ℓ(20kg ÷ 0.4) ③ 환산계수 1.7은 토사류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 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3.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봉투 봉투가격 = [처리단가]kg × 봉투규격(ℓ) × 0.25 + 봉투제작비]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 주] ① 처리단가 = (소각장반입료 + 수집운반비)톤 ② 봉투규격: 60ℓ ③ 환산계수 0.25는 조개껍데기 비중으로 부피단위를 무게단위로 환산하여 봉투규격을 ℓ로 산정하기 위한 산식 ④ 수수료자립도: 조개껍데기류폐기물 처리비는 처리금액의 100%로 정함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⑤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⑥ 판매이익: 9%를 기준으로 적용 ※ 판매이익,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규 제 영 향 분 석 서

분석대상 규제개요

기 본 정 보	규제사무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규제조문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근거(위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소 관 부 서 및 작 성 자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시설팀장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시설팀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안민기 소병철 이남희							
구 분	신설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행정적규제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설(강화) 규제 내용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장소 등 물의 종류별로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문앞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안에 보관용기가 설치된 그 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 ② 생활폐기물은 청소업체 휴무일인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날과 다음날 배출할 수 없다

[별표 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방법(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배출 시간	봉투 종류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일반용봉투 (흰색)	문앞 배출
재활용품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재활용 전용 봉투, 투명봉투	문앞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음식물류 전용봉투 (황색),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문앞 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후	마대 (황색)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 후 배출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당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시	마대 (흰색)	문앞 배출
카정사업계폐기물	신고 후	카정사업계용 봉투(황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구청 또는 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가. 배 경

- 생활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주민들이 배출하고자 할 때 불편이 있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종류를 줄여 단순화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주민 편의 향상
- 종량제 봉투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키오스크(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모바일에서 신고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처리 효율 증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연번	검토내용	검토결과
1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부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부
3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부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다.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제10조(배출방법)

목적	▪ 주민 불편사항 개선	타 당
수단	▪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배출방법을 통합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함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